

화성비봉 A-4블록 국민임대주택 추가모집

[입주자격완화]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4.06.28.]

1. 건설위치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새비봉남로 40

- '19.9.27.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 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및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LH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개별 상황 등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의사소통 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모집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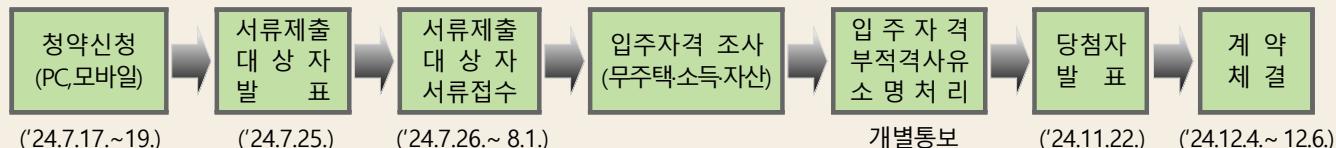
- 본 단지는 국민임대(545호)와 영구임대(182호) 혼합단지로, 본 공고문은 **국민임대** 입주자 추가 모집 공고문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 6. 28(금)**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고는 소득기준을 완화(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이하)하여 모집합니다.**
- **소득 완화 모집으로 입주한 경우 최초계약(2년) 이후 1회만 재계약(2년)이 가능하나, 재계약 만료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예외(추가 2년 재계약)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재계약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7페이지 및 22페이지 「10. 유의사항-임대대상 및 조건」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 주택의 공급형은 전용면적 29㎡, 37㎡, 46㎡ 주택이며, 세대원 수에 관계없이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한 유형(예 :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PC 또는 모바일)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P C 청약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청약신청 → 임대주택
 - * 인터넷 모바일 청약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 현장접수 :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가능)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화성비봉 A-4블록 국민임대 추가모집
주택관리번호	2024000334

- 신청 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30페이지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 명 서 명 정 보 제 공 동 의 정 보 제 공 사 실 미 통 보*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공급일정

청약 신청 (인터넷 PC/모바일)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당첨자 발표	계약 체결 (전자계약)
'24.07.17(수) 10:00 ~ '24.07.19(금) 18:00 ※ 24시간 신청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현장접수) 7.19(금) (10시~16시) ※ (현장접수 장소) LH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24.07.25(목) 17:00 이후 (확인방법)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24.07.26(금) ~ '24.08.01(목) (서류제출방법) 등기우편 (등기우편발송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화성비봉 A-4블록 국민임대 담당자 앞 ※ 등기우편은 '24.08.01(목)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일반우편 접수불가	'24.11.22(금) 17:00 이후 (확인방법)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조회' 또는 ARS(1661-7700)	'24.12.04(수) 10:00 ~ '24.12.06(금) 17:00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현장계약) 12.06(금) (10시~16시) ※ (현장계약 장소) LH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 청약신청 내용 변경(수정 또는 삭제)은 청약신청 기간 동안 가능하며, 청약마감 이후에는 변경 불가합니다.
- (현장접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아래의 장소에서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기간 : 7.19(금) 10:00~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장소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
 - 신분증,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공고문 15페이지\]](#) [7. 신청서류] 참조, **서류 미지참 시 접수 불가**)
 - 현장 접수하는 경우 서류제출기간에 서류를 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인터넷(PC, 모바일) 청약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4.07.25(목)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 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P C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 우측상단 ≡(메뉴) 클릭 → 청약 탭 내 『청약결과 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7. 신청서류\]](#)를 참고하셔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24.08.01(목) 우체국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함)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변경(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 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3.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공급형	세대 당 계약면적(m ²)					합계	공급호수			건물구조 · 난방방식	입주예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계 (500)	입주자 (231)	예비자 (269)					
			기타공용	주차장										
29A	29.74	16.0161	3.5314	14.6730	63.9605	136	97	39						
29B (주거약자)	29.74	16.0161	3.5314	14.6730	63.9605	34	24	10						
37A	37.52	20.2060	4.4552	18.5115	80.6927	24	8	16						
46A	46.47	25.0259	5.5180	22.9272	99.9411	306	102	204						

■ 임대조건

공급형	임대조건				월임대료 (원)	전환 가능 보증금한도액 (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임대보증금(5%)			임대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5%)	잔금(95%)							
29A	13,850,000	692,500	13,157,500	162,830	(+) (-)	16,000,000 9,000,000	29,850,000 4,850,000	69,490 189,080		
29B (주거약자)	13,850,000	692,500	13,157,500	162,830	(+) (-)	16,000,000 9,000,000	29,850,000 4,850,000	69,490 189,080		
37A	23,920,000	1,196,000	22,724,000	211,020	(+) (-)	21,000,000 17,000,000	44,920,000 6,920,000	88,520 260,600		
46A	36,481,000	1,824,050	34,656,950	269,760	(+) (-)	27,000,000 27,000,000	63,481,000 9,481,000	112,260 348,510		

- 화성비봉 A-4블록은 국민임대주택(545호)과 영구임대주택(182호) 혼합단지로서, 본 공고문은 직전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미계약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국민임대 입주자를 추가모집하는 것으로 우선공급은 없습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 주택보수 등으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원이 공가호수를 초과한 경우 예비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 주택형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29B형)**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기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본 단지의 **최초 입주는(23.10월)**이며, 금회 모집공고 당첨자(입주자)의 **입주예정월('25.1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최장 30년까지 임대가능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되지 않는 장기공공임대주택입니다.**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공급자격 해당 여부 및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6.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자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공고문 [13. 무주택 확인 기준 및 소득·자산 항목 자료 출처] 참고)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비 고
세대구성원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세 대 구 성 원	외 국 인 배 우 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 국 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 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하고, 향후 당첨 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본인과 (예비)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해당 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 아래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 란?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① 고령자(65세 이상인 자)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 · 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 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 득	가구원수	기본 조건		자격완화 조건 (소득기준 150%)	참고사항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기준		
70%	1인가구	90%	3,134,668원 이하	5,224,446원 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 태아 포함)
	2인가구	80%	4,332,570원 이하	8,123,568원 이하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3인가구		5,039,054원 이하	10,797,974원 이하	
	4인가구		5,773,927원 이하	12,372,701원 이하	
	5인가구		6,142,550원 이하	13,162,607원 이하	
	6인가구		6,694,297원 이하	14,344,923원 이하	
	7인가구		7,246,045원 이하	15,527,240원 이하	
	8인가구		7,797,793원 이하	16,709,556원 이하	* 9인 이상의 가구는 8인가구 월평균소득 기준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자산	<p>1. 총자산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p> <p>2. 자동차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p> <p>※ 총 자산기준과 자동차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p>
----	-------------------------------------------------------------------------------------------------------------------------------------------------------------------------------------------

* 본 공고문에 따른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재계약을 1회에 한해 허용하되(소득 이외 다른 요건은 충족해야 하며, 소득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 1회 재계약 허용합니다.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본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며, 할증비율을 적용합니다.
- 갱신계약 세부 적용기준은 일부 변동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소득 · 자산 산정방법 (공고문 [13. 무주택 확인 기준 및 소득 자산 항목 자료 출처] 참고)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p style="text-align: center;">※ 총자산 산정 시 자산합계금액에서 부채 차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순서 : 순위(거주지) → 배점 → 추첨

1. 신청자 수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 거주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6.28.)**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일반공급 배점기준)**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일반공급 배점기준)**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 배점기준

배점항목	배점기준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화성시 에 계속 거주한 기간)	가.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5년 이상 : 3점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 나.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다.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 라.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마.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 바. 61회 이상 : 6점
③ 미성년자녀수(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 * 19세미만(2004.06.29. 이후 출생자녀)	가. 2자녀 : 2점 / 나. 3자녀 이상 : 3점 *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만 인정
④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가.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 3점 나.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u>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u>) : 3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하거나 '혼인한 배우자'가 '신청 시 기재한 배우자'와 불일치 시 계약 해제 가능
⑤ 부모·자녀 간 육아 지원세대 (* 동일단지에 한함)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미성년자녀(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전혼자녀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가 신청자인 경우 : 각 3점 ※ 배우자의 부모 포함 ※ ① 부모(자녀)가 기거주 중인 국민임대단지로 자녀(부모)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 ② 부모세대 자녀세대가 별개 세대로 한 단지를 각각 신청하는 경우, ③ 한 단지 내에서 부모 자녀가 같이 거주하다 이 중 한 세대가 동일 단지를 신청하고 입주 시 세대 분리하는 경우 포함 ※ 배점 부여는 신청한 2세대가 모두 당첨 시에만 부여하며, 한 세대라도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는 배점 미부여
⑥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해당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배점 인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 까지, 사목, 아목, 자목, 카목에 해당하는 자※ : 3점 ※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p>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고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p> <p>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p> <p>카.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 구원을 포함) : 3점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 (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3점
-----------------------------------------------------------------------------------------------------------------------------------------------------------------------------------------------------------------------------------------------------	----------------------------------------------------------------------------------------------------------------------------------------------------------------------------------------------------------------------------

⑦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6.28.](#))까지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 제외)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 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
(예를 들면 '22.5.1일 국민임대 최초계약 후 입주, '23.3.1일 명의변경, '23.4.1일 국민임대 재신청시 양도인 양수인
모두 1년 이내이므로 -5점, 만약 '23.5.3일 신청한다면 1년 초과하였으므로 -3점)

※ 단, 입주자의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 배제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 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미성년자녀 수(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29B) 공급 대상자 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 주 자 선정순서 : 주거약자 → 순위(거주지)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 → 추첨

1. 신청자가 아래의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 ① 고령자(65세 이상인 자)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일반공급 대상자도 신청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

2. 신청자 수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 거주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6.28.)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는 자
 -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에 거주하는 자
 -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3.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이 높은 순으로 선정
4. 배점(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주거약자용(29B) 주택 배점기준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 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화성시 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③ 장애정도 (*공고문 33~36페이지 참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④ 사회취약계층(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⑤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6.28.)까지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 제외)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 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			
※ 단, 입주자의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 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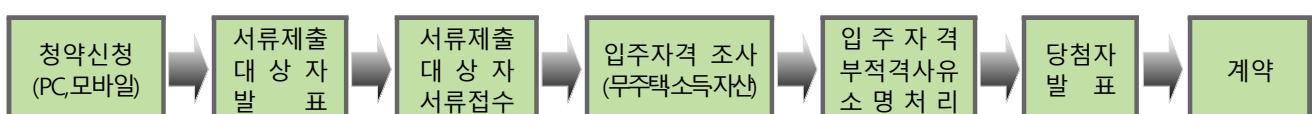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5. 입주자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등

■ 입주자 선정절차



■ 입주자격 검증

-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전체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현장대행접수를 진행합니다. (공고문 14페이지 참조)
(그 외의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역 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 시 공고일(2024.06.28.) 기준 화성시 거주 시에는 해당주택 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화성시에서 거주를 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발급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일반공급용]일반공급) → 동의하기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인터넷(PC) 청약접수 방법

■ 신청방법

인증서 준비 → LH청약플러스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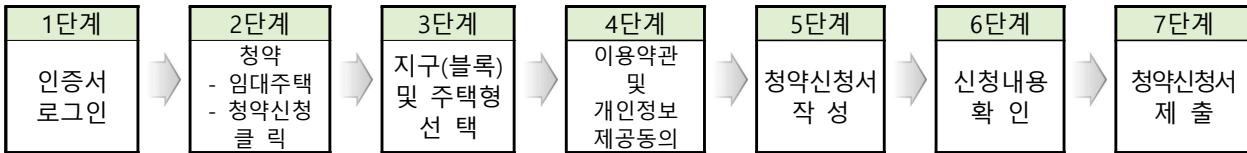
①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청약플러스 접속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인증서 로그인

③ 인터넷신청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청약플러스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 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4.7.17(수) 10:00 ~ 7.19(금) 18: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 내용 변경(수정 또는 삭제)은 청약 접수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단, 7.19(금)은 18시 전까지**)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접수 방법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①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 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Play스토어에서 앱 다운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설치 또는 민간인증서 발급)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있거나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모바일 신청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App)의 '인터넷청약 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모바일 청약 건을 PC에서 수정·취소가 가능하며, PC에서 청약한 건을 모바일에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 내용 변경(수정 또는 삭제)은 청약 접수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단, 7.19(금)은 18시 전까지)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접수 방법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에 한함)

기 간	7.19(금)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약 도
장 소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대 중 교통편	(지하철)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도보 2분 거리) (버 스) 오리역 하차 - 일반버스 : 60, 101, 116-3, 300, 390, 520, 700-2, 720-1A, 720-2, 820 - 간선버스 : 102, 1101, 1241, 1303, 3500, 7007-1, 8100, 8106, 8109	
구 비 서 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래 서류와 [7.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미지참시 접수 불가) • 본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 시(예비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별지4호 공사서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별지4호 공사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6.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인터넷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4.7.25(목) 17:00 이후**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PC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확인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 우측상단 ≡(메뉴) 클릭 → 청약 탭 내 『청약결과 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일반우편 접수 불가**)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분실 등의 우려로 **방문 서류제출은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기간 : **2024.7.26(금) ~ 8.1(목) (24.8.1(목)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서류제출방법 : 등기우편으로 발송 ([7. 신청서류] 참고)

* 우편발송주소 : (우: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화성비봉 A-4블록 국민임대 담당자" 앞 (봉투 곁면에 "블록,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 반드시 기재)

7.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4.06.28.**)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23456-1234567 (O), 123456-1***** (X)

※ 서류 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기한 내에 제출**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현장방문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추가 구비(제출)서류

※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에서 청약접수 하실 경우** 기본서류와 더불어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 청약접수 시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 대리발급한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로 신청은 가능함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 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제출서류

※ **공사양식**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해당 공고문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상세내용	부수
공 통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와 등본 상 세대분리 되어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2인 모두 각각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p>※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p> <p>※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p>	1통
	예비입주자 증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방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공사 양식 (별지1-1호)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전원 작성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각 1통 공사 양식 (별지 1-2호, 1-4호)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LH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p>※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처리될 수 있음</p>	1통 공사 양식 (별지1-3호)
	소득기준완화 입주자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방법) 내용 확인 후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공사 양식 (별지1-5호)
해 당 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p><아래 해당자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화성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 제출 <p>※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p>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p><아래 해당자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배우자가 외국인등록이 된 외국인인 경우(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으로 사회취약계층 배점(공고문 9페이지 ⑥)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 중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 · 자녀 간 육아지원세대 배점을 받고자 할 경우 <p>* 예비신혼부부 신청자 중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u>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u>” 제출</p>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p><아래 해당자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p>※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p>	1통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p><아래 해당자만 제출></p> <p>태아 또는 양자를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부양가족수(주거약자용), 미성년 자녀수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입양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혼인관계서류	<p><아래 해당자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혼부부 배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6세 이하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 단서(확인서) 등 -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 예비신혼부부용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공사양식, 별지2호 서식),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부모 · 자녀 간 육아지원 신혼부부세대 배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기간 7년 이내임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전부) 	
감점 적용 배제 관련 서류	<p><아래 해당자만 제출></p> <p>입주자의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 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 산 : 기본증명서 등 세대구성원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노부모부양 : 주민등록표등본 사 망 : 기본증명서 등 세대구성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1통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 배우자)	<p><아래 해당자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청약순위확인서 (현장방문 신청자는 반드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가능)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확인서는 온라인(www.applyhome.co.kr)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가능 <p>※ (주의) 청약순위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실제 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입회수(인정회차)에 따른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주택관리번호 : 2024000334</p>	
기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대상(해당)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세대원 포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지방보훈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부양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사회보장급여통지서에 첨부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서"(수급자 신청 후 사회보장급여통지서를 수령하는데 시간이 통상 2달이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신청 요망)	행정복지센터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임을 입증하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대상자 확인서(차상위초과부가급여 제외),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중위소득 50%이하자로서 신청후 발급에 60일 소요되므로 미리 확인 요망)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 중 청약저축가입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계약사실확인원, 청약통장1면 사본	

■ 주거약자용 주택(29B) 신청자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대상(해당)자	제출서류	발급처
① 고령자(65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표등본(필수서류)으로 확인	별도제출 없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12.7.1. 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 '12.7.1. 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지방보훈청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 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주거약자용 주택(29B) 배점기준 관련 서류 (공고문 11페이지의 배점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

배점기준	제출서류	발급처
① ~ ② 부양가족수,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별도제출 없음
③ 장애정도	장애인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④ 사회취약계층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생계·의료급여수급자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2)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 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한 부모가족 증명서, 우선 돌봄 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 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행정복지센터 2) 국민건강보험공단 / 행정복지센터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4. 11. 22(금) 17:00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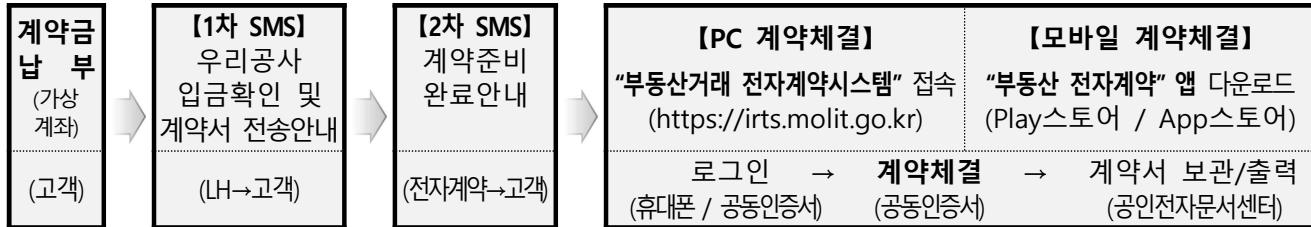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계약안내

- 전자계약 체결** [24. 12. 04(수) 10:00 ~ 12. 06(금)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자로 선정된 이후 주소 및 휴대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절차】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 ※ 「1차 SMS」는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 ~ 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 공사의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1차 SMS」는 청약신청 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하여야 합니다.**
-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저장 가능합니다.

• 현장계약 체결 [24. 12. 06(금) 10:00 ~ 16:00]

- 계약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타 단지 계약과 장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현장계약장소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그 외의 분들은 가급적 위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서류(본인 + 대리인 계약 시 모두 지참)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훌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가 대리계약 시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가 대리 계약 시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9. 편의시설 설치 안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 대상자에 따른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24.12.04(수) ~ 12.06(금))**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또는 **공사양식** 참고
-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 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 전자계약 체결하시는 분 중 편의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의 경우 **신청서 및 신청자격 서류를 반드시 등 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함** (우체국 소인이 '24.12.06(금) 이내여야 함)

* (발송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화성비봉 A-4블록 국민임대 담당자 앞"

■ 주거약자용 주택(29B형) 편의시설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을 중복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바닥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픈 설치	
부엌	조명밝기 600~900lux(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좌식 싱크대 설치	
욕실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침실	수건걸이 높이조정	청각장애인
기타	침실조명 밝기 300~400lux(lux)	시각장애인

* 욕실 출입문 개폐방향 변경, 동작감지센서등, 안전손잡이(세면대 및 샤워공간, 좌변기, 욕조), 바닥미끄럼방지, 바닥단차줄임, 비상연락장치, 동체감지기, 높낮이조절 샤워기, 비디오픈 설치가 이미 적용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29B형 외 주택에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신청 불가

- 상이 3급 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 이상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비디오픈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10.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자격완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 자격 완화 사항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 자격완화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임대조건이 적용되나, 자격완화 계약자는 갱신계약이 일부 제한됩니다.																	
임대대상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공고에 따른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재계약을 1회에 한해 허용 하되(소득 이외 다른 요건은 충족해야하며, 소득초과 비율에 따른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4호에 따른 본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며, 할증비율을 적용합니다. (갱신 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p>*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비율</th> <th colspan="2">할증비율</th> </tr> <tr> <th>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시</th> <th>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계약 시</th> </tr> </thead> <tbody> <tr> <td>10%이하</td> <td>100%</td> <td>110%</td> </tr> <tr> <td>10%초과 30%이하</td> <td>110%</td> <td>120%</td> </tr> <tr> <td>30%초과 50%이하</td> <td>120%</td> <td>140%</td> </tr> </tbody> </table>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p>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140%</p> <p>*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u>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u>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현재 7%(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에는 3.5%)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 「4. 신청자격」 참조) •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및 계약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 및 계약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중복입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하나의 공고에 대해 다수의 세대구성원이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 세대 분리는 중복입주로 간주되어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결정 및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임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

	<p>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 등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됩니다.</p>
자동차 등록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4년의 경우 3,708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서 조회가능하며 개인별 차량 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구 및 단지 여건	<p>■ 지구 내·외부 여건(지구 내 또는 지구 인근의 혐오시설)</p> <p>[입지, 교통, 환경, 생활편의시설 등 지구 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도심으로부터 35km 거리에 있으며, 화성, 안산, 수원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대학교, 산업단지 등이 분포하여 수도권 도시들의 중심지 역할을 기대 서해안고속도로, 국도39호선 등 인근 경기도권 대도시(수원, 광명, 평택 등)들과 연결해주는 도로가 인접해 있고, 시도 78호선 국도가 지구 내부를 통과하고 있음 지구 서쪽과 남쪽으로 매봉산, 왕래봉산, 만찬산 등 자연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지구 내에 119 안전센터 및 학교 등이 예정되어 있음 안산반월산업단지, 수원일반산업단지, 송정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입지 및 우수한 교통여건으로 정 주인구 증가 본 단지는 화성비봉지구 내의 기착공 및 미착공 필지가 인접하여, 입주 후 공사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공사 차량 통행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음 인근 지구로는 어천역이 있는 '화성어천지구' 및 화성시청이 있는 '화성남양뉴타운'이 존재함 <p>[지구 내 또는 지구인근의 혐오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북측 및 남측에 위험물 저장시설인 '주유소'가 존재하며, 북측에서 3km 이내에 市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폐기물 처리시설은 사업지구내에 위치하지 않음 본 단지 북측 반경 300m 이내 목장 및 과수원이 있음 단지 북서측 직선 200m거리에 왕래봉산 분묘가 위치함 단지 남동측 직선 600m거리에 소형공장이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남서쪽 직선 3km 거리에 양노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대형 트럭이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본 단지 인근 군비행장이 위치하여 비행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토지이용계획도면과 최종 토지이용계획도면은 당해 사업지구의 지구계획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당해 사업지구는 사업 진행지구이므로 입주 후에도 주변도로, 조경·조성공사,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분진 및 교통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도로 개설계획은 교통영향평가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자연·취소될 수 있음 학교설립계획은 지자체 교육지원청의 결정사항이므로, 여건에 따라 개교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상업시설 및 공공청사(소방소 등), 편의시설 등의 설치는 해당부지 판매일정 및 매수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p>■ 단지 내부 여건</p> <p>[소음 및 생활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 및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 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및 세대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전기실 주변 401, 410동 인근동(동)은 발전기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동 지하 PIT층, 지하주차장 등에 집수정, 배수펌프, 제연헬름(전체 동) 등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진동, 환기 등이 세대로 영향(전달)을 미칠 수 있음
-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수경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주민 공동이 사용하는 야외 시설물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 생활권의 침해를 줄 수 있음
-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일부동 저층세대의 경우 인근 부대시설의 냉방을 위한 실외기로 인해 미관 저해, 소음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전면 또는 후면에 설치되는 실외기로 인해 미관 저해, 소음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의 경우 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단지 주변에 차량도로가 있으며 단지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도로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단지내 상가, 주차출입구 등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 및 저층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또한, 단지내 시설의 위치에 따라 일부 동 및 세대에서는 이용상 제한 또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재활용품 보관소 및 쓰레기수거함이 일부 동 주변(정면, 측면, 후면)에 설치되어 악취 및 해충,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재활용품보관소는 지상 6개소 계획되어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각 동별 거리가 다소 차이가 있음
- 한전 전기 인입용 PAD S/W는 주출입구 좌측에 설치됨
- 상가용 전기 인입용 PAD TR은 406동 1호 라인 근처에 설치되고, 약간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주차장]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중 지하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각 2.3m, 2.4m입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기기 가동 시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탑, 자전거보관소, 쓰레기수거함, 주동진입 경사로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청약신청·계약체결 전 팸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환기탑, 외계단실 등의 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바닥 마감재 특성상 차량 진출입·회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됨
- 아파트 지하 · PIT층은 지반상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レン치는 트렌치 내 물이 고일 수 있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에 위치하며,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으로 단지 배치 상 동별로 주차 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으며 계획 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일부구간에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며, 주차장 출입구 인접세대는 경고등으로 인해 불빛,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조경]

- 각동 전면 · 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및 시설물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전후면에 소방 에어매트 설치구간에는 교목(키큰 나무) 식재 불가함

[부대시설]

- 근린생활시설은 분할되지 않는 토지로서 단지 내 아파트 대지면적과 일정 면적을 지분으로 구분함
- 주민복지시설(어린이집, 초등돌봄교실, 피트니스,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사회복지관, 경비실, 경로당,

사회적기업 등)에 내부 시설물(비품, 가구, 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는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으로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팸플릿 단지배치도 참조)
- 각 동 1층에 택배 보관함이 설치됨(409동은 1층 출입구 외부에 설치됨)

[단지공통 유의사항]

- 단지 출입구는 2개소임 (차량 출입구1개소, 보행자 출입구 1개소)
- 출구에 차양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차양의 재질에 따라 우천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조명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보도·조경·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본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세대는 입주 시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특히 벽걸이 TV설치 시 주의 요함)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음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위치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는 401, 402, 404, 410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나 전파 수신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전동 옥상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며, 일부세대는 설치된 태양광 모듈 빛 반사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당해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 및 급탕공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아파트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 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문,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단지명칭, 동번호, 색채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신설은 교육청 일정 및 학생 수용 인원에 따라 지연 또는 변경 될 수 있음
- 청약·계약 전 단지 및 현장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관련 유의사항

- 시스템욕실(UBR)이 설치되면 욕실문 개폐 시 내·외부 압력차에 의해 천장점검구의 들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음
- 화장실 천정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 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등이 설치되어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 하며, 거실 및 각 침실에는 난방용 온도조절기가 설치됨
- 세대 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주방가구 상하부장 후면에는 벽타일이 시공되지 않고 신발장 후면에는 벽도배가 시공되지 않음
- 냉장고(김치냉장고 포함) 배치를 위한 냉장고장이 별도 설치되지 않음
- 냉장고 설치부위에 급수배관 및 배수배관은 설치되지 않음
- 각 평형별로 현관의 신발장 설치 개소 상이함
- 아파트 세대현관문에는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되지 않음
- 벽/바닥타일 등은 실제 시공 및 생산과정에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스테이플 건(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마감재의 디자인 특성(색상, 패턴, 재질 등)은 하자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는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인해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및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에어컨 실외기 루버는 수동으로 작동되며, 계절에 따라 입주자가 직접 개폐하여야 함
- 발코니 샤시의 개폐방향은 분양홍보물에 적용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내부에 빨래 건조대 등을 설치되지 않음
- 일부 발코니에 선홈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다소 소음이 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세탁용 수도꼭지가 설치됨
- 발코니 분절형 창호 설치로 별도 발코니 난간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팸플렛]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 오기,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음
- 팜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 팜플릿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제공되지 않음
- 팜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함
-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 중 미표기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팜플렛에 포함되지 않는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 수준 내에서 변경 될 수 있음

■ 초·중·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 초등학생은 (가칭)비봉1초등학교를 신설하여 배치할 계획이나 입주 시기에 맞춘 개교는 불가하여 개교 전까지 비봉초등학교로 임시배치할 예정이며, 학생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비봉초까지 통학환경이 열악하여 관할 교육지원청과 협의중이며, 입주 전까지 통학대책이 마련될 예정임)
- 중학생은 비봉중학교[비봉중, (가칭)비봉1중]에 배치할 계획이며, 고등학생은 화성시 기존 고등학교에 지망 가능합니다.(※ 단, (가칭)비봉1중은 개교시기 미정임)
- 향후 학교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고등학교 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입주시기, 세대수, 주택공급유형)의 변경, 교육정책 및 주변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변동요인 발생 시 학생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사업계획(입주시기, 세대수, 주택면적)의 변경, 교육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학생배치계획 변동요인 발생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학생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통학구역·신설학교 개교시기·설립계획·학급수 및 학생수용계획은 복록별 공동주택 입주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인근학교 현황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야 함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세대인 경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공급신청서 작성 시 장애인 세대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기타사항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에 대출가능 여부를 문의하시어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월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월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1.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주택성능등급

1) 소음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화장실 급배수소음	★
4.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5.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2) 구조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가변성	★
2.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3.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4.내구성	★

3) 환경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질성토량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3) 환경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비오텁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4)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대중교통의 근접성	★★★★
3.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사용자 매뉴얼 제공	★★★★★
8.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방범안전 콘텐츠	★

5)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감지 및 경보설비	★
2.제연설비	★
3.내화 성능	★
4.수평피난거리	★★★★
5.복도 및 계단 유효폭	★
6.피난설비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구 分	적용 여부
측벽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외벽(직접면)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미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LED조명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지붕	적용	절수설비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12.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감리회사
화성비봉 A-4BL	한국토지주택공사	남광토건(주), 신영건설(주), 경안종합건설(주), 태금기계(주), (주)인성정보대구지사, (주)유명이엔씨	(주)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업체)

13. 무주택 확인 기준 및 소득 · 자산 항목 자료 출처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 이거나 멀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멀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11)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자의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달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달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정 자료
총 자산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14. 장애인의 장애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보행 또는 일상생활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 가. 청력을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활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증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임대문의 및 관련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1670-0003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P C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6. 2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